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-566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5월 11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의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과 중복되는 규정 등 전부 개정
- 나. 관련 서식 추가
  - 중요재산 현황(제9조 관련)
  -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,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(제10조 관련)
  - 포상금 지급신청서(제11조 관련)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: 기획예산과장, 전화: 450-7288, FAX: 3425-1719, E-mail: caiyong0422@gwangjin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